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3
----------	------

발의연월일 : 2016. 8. 29.

발의자 : 최도자 · 김광수 · 정인화
전혜숙 · 윤영일 · 강창일
주승용 · 박명재 · 김중로
이용주 · 김해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제47조(별칙)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